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4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 : 송기헌・박 정・민홍철

인재근 · 서영교 · 김민기

허 영·김종민·도종화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간이과세 적용대상자의 기준 공급대가액이 1999년 개정 당시와 같은 4천8백만원에 머물러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코로나19의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개인사업자들이 심각한 경영상의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2억원"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 2억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